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중재판정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취소  
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



2024년 2월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PHAM HONG DIEM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중재판정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취소  
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

지도교수 김철수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PHAM HONG DIEM

PHAM HONG DIEM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4년 2월



위원장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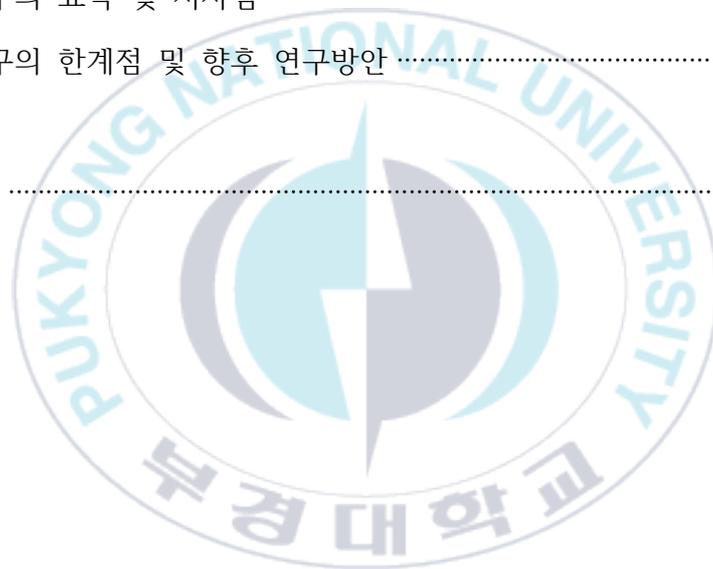
위 장 경영학박사 안 태 건 (인)

위 장 경제학박사 김 철 수 (인)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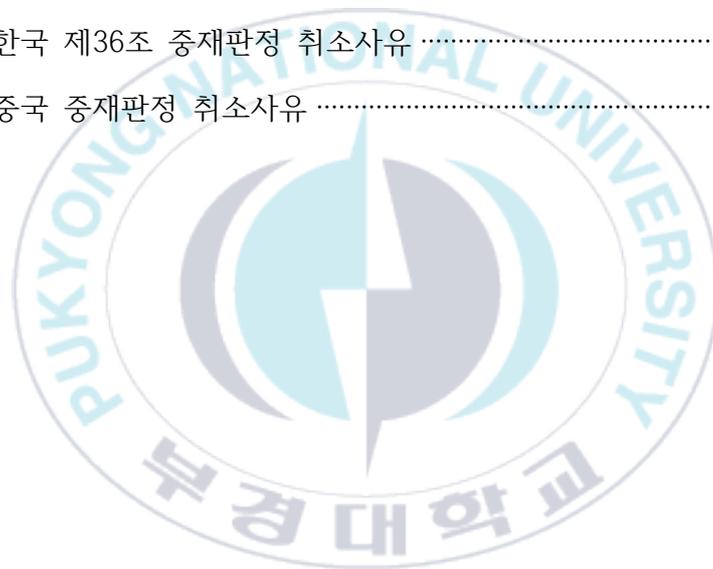
표 목차 .....	iii
Abstract .....	iv
<b>I. 서론 .....</b>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3. 선행연구 .....	2
<b>II. 베트남 중재관련 법제 개관 .....</b>	<b>5</b>
1. 베트남 중재법 제정 과정 .....	5
2. 베트남의 중재기관 .....	7
3. 외국중재와 섭외중재의 구분 .....	12
<b>III. 중재판정 취소의 분석 .....</b>	<b>14</b>
1. 중재판정 취소의 특성 .....	14
2. 중재판정의 취소 현황 .....	15
3.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 .....	15
4. 한-중-베 상사 중재 취소 비교 .....	23
1) 한-중-베 상사 중재 취소 절차 .....	23
2) 한-중-베 상사 중재 취소 절차 비교 .....	25

3) 한-중 각국의 상사 중재 판정 취소 사유 .....	27
<b>IV.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판례 및 개선 방안 .....</b>	<b>41</b>
1.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판례 .....	41
2. 개선방안 .....	49
<b>V. 결론 .....</b>	<b>52</b>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52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안 .....	54
참고문헌 .....	56



## 표 목차

<표 1> 베트남 중재법 제정 및 개정 역사 .....	6
<표 2> 베트남 중재기관 .....	8
<표 3> 베트남 상사 중재법의 11장 중재판정 취소 .....	15
<표 4> 한-중-베 상사 중재 취소 절차 .....	26
<표 5> 한국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사유 .....	33
<표 6> 중국 중재판정 취소사유 .....	34



**Analyzing Arbitration Award Annulment Cases in Viet Nam Courts and  
Exploring Strategies for Enhancement**

PHAM HONG DIE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rbitration award represents the final decis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 resolving the entire dispute outlined in the complaint, conclud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nd standing as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Following international practices, the annulment of an arbitration award is a legal procedure conducted by the court to review whether the issued arbitration award fully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order and trial procedures of commercial arbitration, following the law. In Vietnam, the right to request the annulment of an arbitration award is specified in Article 69, and the grounds for annulment are outlined in Article 68 of the 2010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recent years, domestic disputes have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0% of cases and are on the rise, particularly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enterprises. Despite commercial arbitration being a swift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with various advantag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annulment of arbitration awards by the court.

This article focuses solely on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related to arbitral awards. It compares the grounds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law on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e limitations of grounds for annulment are clarified, and multiple solutions are provided to enhance legal regulations for annulling arbitration awards.

**Keyword:** Cancel arbitration award, Grounds for canceling arbitration award, Vietnamese commercial arbitrator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특징은 국제 경제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발전하는 세계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의 개방과 함께 국내와 국제적으로 무역 활동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라는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세계경제질서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으로 189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엔, 아세안 국가 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포럼, 세계 무역 기구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국제 경제 통합 과정은 많은 중요한 진전이 있다. 2020년에는 베트남과 유럽 연합(EU)이 EVFTA를 체결하고,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CPTPP가 공식 발효된다. 1995년 아세안(ASEAN) 가입과 2001년 미국과의 FTA협정 발효 이후 2002년부터 매년 6~8%의 경제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07년 WTO에 가입한 이후 글로벌 경제에 더욱 급속히 편입되어 가고 있다.

국제경제관계, 무역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항상 당연한 현상이며, 분쟁 해결은 필연적인 일이며 현재 세계 경제의 많은 이슈이다. 베트남이 WTO에 가입할 때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중재법 제정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비롯된다. 2003년 무역중재법령이 제정되면서 베트남의 중재법 형성과 완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2020년 분쟁 해결 활동 통계에 따르면 2020년 VIAC에서 처리한 분쟁 건수는 221건이며 상위 3개 분쟁국은 중국, 싱가포르 및 한국이다. 매매 분야와 관련된 건은 103건으로 47%에 해당한다.<sup>1)</sup> 2010년 중재법이 발효된 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VIAC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은 20건이었으며, 이 중 10건의 판정이 취소되며 전체 건수의 50%를 차지했다.<sup>2)</sup> 2010

1) VIAC homepage ([https://www.viac.vn/images/Resources/Annual-Reports/2020/VIAC\\_Annual-Report.pdf](https://www.viac.vn/images/Resources/Annual-Reports/2020/VIAC_Annual-Report.pdf))

2) VietNam lawyer journal (<https://lsvn.vn/huy-phan-quyet-trong-tai-thuong-mai-theo-phap-luat->

년 상사 중재법이 분쟁 해결 방식의 운영 효율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함을 드러내며 법원이 무효화한 중재판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베트남 사용하고 있는 상사 중재법의 중재판정 취소 사유를 분석하고 취소된 중재판정 판례를 검토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상사 중재법의 베트남에 대한 중요성과 중재판정의 취소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명확히 하였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도 제시하였다.

제2장 ‘베트남 중재 관련 법제 개관’에서는 베트남 중재법 제정 과정 및 중재기관, 외국 중재와 섭외 중재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중재판정 취소의 분석’에서는 베트남 중재판정 취소의 특성 및 현황,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살피고 한국-중국-베트남 상사중재 취소사유 비교하였다.

제4장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판례 및 개선방안’에서는 베트남 법원에서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3. 선행연구

과거 진행된 베트남 중재법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진아(2016)의 연구는 베트남에서의 최근 중재 동향을 살펴보고 베트남에서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의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베트남 중재적격성, 준거법,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센터, 중재판정 등에 관하여

---

[viet-nam-va-mot-so-kien-nghi1610677477.html](http://viet-nam-va-mot-so-kien-nghi1610677477.html))

검토하여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엔항, 박성호(2020)<sup>3)</sup>의 연구는 베트남 상사분쟁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중재판정을 통해 발생하는 베트남 상사 중재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베트남 법원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선례 분석하고 있다. 정홍식, 임병우, 이연경, 김강 (2020)<sup>4)</sup>의 연구는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되는 것과 관련된 법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Le, Net, Shin, Choong-il(2018)<sup>5)</sup>의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 중재의 현황과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먼저 베트남의 중재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베트남 중재에 대한 현재 상황 및 법적 틀 외에도 중재 계약, 중재인, 중재 절차, 증거, 구제책 및 중재와 관련된 법원의 관할권과 같은 상업 중재법에 따른 특정 주요 문제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기본 입법 체계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상사 중재에 대한 특정 중요한 법적 조항을 검토할 것이다.

베트남 중재법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Bui Thi Bich Lien(2013)<sup>6)</sup> 베트남중재법에 대한 베트남의 각 규정과 법제도의 특징을 분석또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면서 베트남의 사회적 규범과 전통적 관행, 국제적 변화의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Do Huu Chien (2017)<sup>7)</sup> 베트남 법에 따른 상사중재판정 취소 적용현황을 호찌민 시의 현실에서 평가하여 중재판정 취소규정 개선을 위한 권고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Tran Minh Duc, Trinh Tuan Anh(2019)<sup>8)</sup>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

3) 지엔항, 박성호.(2020).베트남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VIAC 사례를 중심으로.무역학회지,45(3),147-166.

4) 정홍식, 임병우, 이연경, 김강.(2020).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국제사법연구,26(2),619-654.

5) Le, Net, Shin, Choong-il.(2018).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동아법학,(79),257-286.

6) Bui Thi Bich Lien,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7) Do Huu Chien, "Hủy phán quyế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heo pháp luật Việt Nam từ thực tiễ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Master's thesis in law, 2017

8) Đức, T. T. M., & Anh, T. T. T. CĂN CỨ VÀ QUYẾT ĐỊNH HỦY PHÁN

로 한 근거 및 결정에 대한 상사중재 법률 조항의 현재 상태를 평가바탕으로 재판 관행에 따라 법률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기재한다. Tinh, H. X., & Tho, H. T. (2020<sup>9</sup>)이 기사는 법원 사건 재판 중 2010년 상업 중재법 조항에 따른 중재판정의 단점 중 하나를 다루며, 심판 결정 취소를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설명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저자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때 몇 가지 문제와 부적절성을 분석하고 지적한다. 거기에서 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제시된다.

과거 진행된 선행연구는 베트남 중재제도 및 판결 검토하여 유의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바탕으로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 특히 중재판정 취소에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례 검토하여 베트남 무역 중재법률을 완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하기를 선행연구와 차이점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베트남 중재관련 법제 개관 과정 및 구분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후 중재판정의 취소 현황, 근거 분석하여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판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무역 중재법률에 완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QUYẾT TRỌNG TÀI THƯƠNG MẠI-QUY ĐỊNH PHÁP LUẬT VÀ ĐỀ XUẤT HOÀN THIÊN.

9) Tinh, H. X., & Tho, H. T. (2020). Bàn về chủ thể có quyền yêu cầu tòa án hủy phán quyết trọng tài.

## II. 베트남 중재관련 법제 개관

### 1. 베트남 중재법 제정 과정

심판은 19세기 말 안남 법전에서 인정된 적이 있다.<sup>10)</sup> 1989년 7월 8일 사이공 상고법원은 Duong Thi Thanh과 Vo Van Thu 사이의 토지 분쟁에서 외국인 전문가를 중재자로 선정하는 데 대한 합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베트남 3개 지방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경제중재는 경제계약체제의 탄생과 함께 등장하고 발전해 왔다. 1960년에 총리는 경제 계약에 관한 임시 규정을 공포하기 위해 1960년 1월 4일자 법령 No.04/TTg를 발표했다. 1960년 11월 14일, 총리는 국가경제중재기구에 관한 법령 No.20/TTg를 발표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경제중재 산업은 중앙, 지역, 시, 도에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경제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후 북베트남에서는 1963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ttee)와 1964년 해양중재위원회(Marine Arbitration Committee)가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설치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제도화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공기업 간의 경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재"가 아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법령 No. 04-TTg를 대체하는 경제 계약 제도에 관한 1975년 3월 10일 법령 No. 54-CP를 발표한 후 1975년 4월 14일에 법령 No. 75-CP를 경제중재센터의 조직 및 운영 헌장을 공포했다. 이 헌장에 따르면 경제중재는 경제계약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4년에 경제 중재가 폐지되고 대신 정부는 경제 중재센터를 설립할 수

10)

[https://viarb.vn/lich-su-phat-trien-trong-tai-thuong-mai-tai-viet-nam/#pll\\_switcher](https://viarb.vn/lich-su-phat-trien-trong-tai-thuong-mai-tai-viet-nam/#pll_switcher)

11) Nguyen C ,Vu A D . "Arbitration in Vietnam"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675-682.

있도록 법령 116-CP를 제정했다.<sup>12)</sup> 이것은 현대 심판의 유형을 인정한 최초의 문서이다. 1995년, 베트남은 뉴욕 협약에 가입했으나 심판 모델은 현대 심판의 규범에 접근하는 여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3년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중재법의 새로운 발전의 상징인 무역 중재 조례를 제정했다. 2003년 무역중재법 시행령은 여러 진보된 점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다가 분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불명확한 판결의 법적 효력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법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제한 법령에는 베트남의 무역 분쟁 해결에 외국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을 중재지로 만드는 데 큰 불이익을 주며 국제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자의 가장 우수한 특성인 중립성, 유연성 및 선택권 존중을 불신하게 만든다.

현행 베트남의 중재법(Arbitration Law 2010: 이하, “중재법(2010)”이라 칭함)은 국회는 2010년 1월 1일 무역중재법을 통과시켜 베트남의 중재에 관한 새로운 단계 만들었다.<sup>13)</sup> 무역중재법은 2003년 무역중재법령의 결점을 보완하여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의 관할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중재인과 법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들이 외국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인가 선정하는 것은 그가 베트남에서 직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으며, 처음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채택하는 데 소비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부터 무역중재법은 현행 법률 문서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여 이러한 규정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더 근접하게 된다.

표. 1. 베트남 중재법 제정 및 개정 역사

연도	내용
XIX 세시말	안남법에서 중재가 인정
1960년	국가 경제 중재기구에 관한 법령 No.20/TTg를 발행
1963년	대외무역위원회 설정
1964년	해양중재위원회 설정

12) 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Economic Arbitration No.116-CP

13) Law No. 54/2010/HQ12 on Commercial Arbitratio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17 June 2010, effective from 1 January 2011.

1975년	무역중재 센터 조직 및 운영현장에 대한 법령 제 75-CP를 공포
1994년	무역중재법 센터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령 No.116-CP를 발표
1995년	뉴욕 협약 가입, UNCITRAL 모범법에 따라 새로운 중재법 제정
2003년	무역 중재 조례 No.08/2003/PL-UBTVQH 발행
2010년	상사중재법 통과

## 2. 베트남의 중재기관

현재 베트남에는 지역별로 다수의 중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 법무부의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현재 43개의 중재기관이 베트남 내에서 운영 중이며 주로 호찌민시와 하노이에서 나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제상사 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중재기관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VIAC'이라 한다)이다. VIAC은 앞에서 언급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상중재위원회가 합병함으로써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 하노이에 중재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호찌민시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재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VIAC는 총 270건의 신규로 접수된 사건이며 2020년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전체 등록 사건 중 57.3%가 국제사건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분쟁 및涉外적 요소(Foreign Elements)가 포함된 사건이다.<sup>14)</sup>

그 밖에도 Can Tho 상업 중재센터(CCAC), 호찌민시 상사중재센터(TRACENT), F상업중재금융센터(FCCA), 동남아시아 상사중재센터(ACIAC), 태평양국제중재센터(PIAC), Viet Nam Think Vuong 상사중재센터(VIFIBAR), 인도차이나 상업중재센터(ITAC) 등의 기관이 독자적인 중재인 리스트를 가지고 베

14) VIAC homepage

([https://www.viac.vn/images/Resources/Annual-Reports/2021/VIAC\\_Bao-cau-thuong-nien-2021\\_220616.pdf](https://www.viac.vn/images/Resources/Annual-Reports/2021/VIAC_Bao-cau-thuong-nien-2021_220616.pdf))

트남에서 운영 중이다.

2018년 1월 Ho Chi Minh City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HCCAA)를 설립하여 국제무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HCCAA에는 현재 100명 이상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설립취지에 맞게 국제중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가 국제중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베트남 내에서 국제중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베트남에 있는 중재기관들이 아직은 국제중재를 주로 다루지는 않거나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당사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은 오히려 ASEAN에 위치한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중재기관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국제중재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베트남 정부 및 중재기관들은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제도 등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과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함이 마땅할 것이다.

표. 2. 베트남 중재기관

지역	중재센터
하노이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하노이) Trung tâm trọng tài quốc tế Việt Nam
	MIAC 국제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quốc tế MIAC
	CHIEN THANG 국제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quốc tế Chiến Thắng
	하노이 국제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Quốc tế Hà Nội
	베트남 투자상사중재센터(하노이)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đầu tư Việt Nam

	<p>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센터(하노이) Trung tâm trọng tài giải quyết tranh chấp thương mại quốc tế khu vực Châu Á - Thái Bình Dương</p>
	<p>인도차이나 상업중재센터(하노이)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Đông Dương</p>
	<p>HA THANH 상사중재센터(하노이)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Hà Thành</p>
	<p>Cong Ly 베트남 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Công Lý Việt Nam</p>
	<p>대한상사중재위원회 대표사무소(하노이)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Ủy ban trọng tài thương mại Hàn Quốc</p>
	<p>동남아시아 상사중재센터(하노이)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Đông Nam Á</p>
	<p>THU DO 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hủ đô</p>
호찌민	<p>Valuinco 국제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quốc tế Valuinco-HCM</p>
	<p>베트남 경제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Kinh Tế Việt Nam (VEAC)</p>
	<p>APEC VN 국제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quốc tế APEC VN</p>
	<p>VIET NAM THINH VUONG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Việt Nam Thịnh Vương</p>
	<p>Atlantic 국제상사중재센터</p>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Quốc tế Atlantic
HTA 중재 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HTA
BA RIA-VUNG TAU국제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quốc tế Bà Rịa-Vũng Tàu
남부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Miền Nam
베트남 변호사 상업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Luật gia Việt Nam
Gia Định 상업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Gia Định
베트남 금융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ài chính Việt
Thịnh Tri 상업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hịnh trí
베트남 상인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nhân Việt Nam
남부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Phía Nam
태평양국제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quốc tế Thái Bình Dương
베트남 은행 및 금융 상업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ài chính Ngân hàng Việt Nam
상업중재금융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ài chính
글로벌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oàn Cầu

	NAM VIET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Nam Việt
	사이공 상사 중재 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Sài Gòn
	LIEN MINH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Liên Minh
	A CHAU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Á Châu
	호치민시 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기타	중부지방상사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Miền Trung
	베트남-중국 국제상사중재센터(꽝닝)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quốc tế Việt-Trung
	D2 상사중재센터(Hung Yen)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D2
	메콩 중재 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Mê Kông-CAN THO
	Cuu Long 중재 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Cửu Long- CAN THO
	BINH DUONG국제중재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quốc tế Bình Dương-BINH DUONG
	Cao Nguyen 상업 중재 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Cao Nguyên-DAKLAK
	Can Tho 상업 중재 센터 Trung tâm trọng tài thương mại Cần Thơ

### 3. 외국 중재와涉外중재의 구분

뉴욕협약<sup>15)</sup>은 상사중재 분야뿐 아니라 국제무역 전반에서도 가장 중요한 다자간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외국 중재판정의 효과적인 인정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견고한 법적 틀을 확립한다. 뉴욕협약(1995년 7월 28일)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지 25년이 넘은 후,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를 승인하는 중재는 많은 생생한 현실을 경험했다. 대부분의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상호 법률 지원 계약 및 베트남 법률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된다. 2015년 민사소송법이 공포되면서 베트남에서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이 비교적 철저하게 통합되고 완성되었다. 그러나 '외국중재판정'(foreign arbitral award)으로 잘못 이해되는 '외국인 중재판정'(award of foreign arbitration) 개념은 뉴욕협약의 정신과도 거리가 멀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유지됐다. 1998년 독일의 새로운 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의 정신을 완전히 흡수하여 만들어졌다. 이 법은 1997년 12월 22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중재법 1998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10장으로 고안되었다.

이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조항을 UNCITRAL 모델법과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매우 작다. 외국 중재판정 문제에 있어서 독일법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뉴욕협약의 조항을 국내법으로 내면화하지 않고 대신 뉴욕협약을 직접 참조 경로로 선택한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1,061(1)조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뉴욕협약의 조항 및 외국 중재판정의 홍보와 관련된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이 당사국인 기타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은 발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뉴욕협약의 모든 힘과 정신을 지지하고 외국 관할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독일 법원의 지원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다.

베트남은 뉴욕협약의 정회원이 되자마자 서둘러 이 협약의 조항을 법적 틀로 전환했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외국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조례(조례 1995)가 1995년 9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는 것

---

15) 외국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유엔에 의해 채택되어 1958년 6월 7일 발효되었다. 2017년 겨울 현재, 뉴욕협약은 전 세계 157개 국가 및 지역에서 가입을 유지했다.

이다. 바로 1995 조례의 1조, 외국 중재판정이 아닌 외국 중재판정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한다: (i) 상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베트남 영토 밖에서 선언된 판정, (ii) 판정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선언되지만, 베트남 중재인 사람이 선언하지 않는다. 위의 조항을 살펴보면, 1995년 조례는 외국중재판정의 개념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뉴욕협약의 관점을 내부화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조례 제1조 1항이 중재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와 관계없이 영토적 요소의 전제적 역할을 강조할 때 뉴욕협약을 완전히 변형한 것이라면, 2항은 외국 중재판정이 베트남 영토 내에서 내려졌지만, 베트남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판정이 아니라는 점을 뉴욕협약 중재의 관점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아마도 베트남 중재인이 선언하지 않은 모든 판정은 국내 판정이 아니라는 공통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중재판정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 중재법(2010)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분쟁의 전체 내용을 해결하고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이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의 중재 법제와 달리 '국제 중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베트남에서는 '외국 중재'라는 범주와 나머지는 모두 '비외국중재'라는 범주로 구분된다.<sup>16)</sup>

중재법(2010) 제3조 제11, 12항에 외국 중재는 베트남 외부 또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선택한 외국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를 의미한다. 외국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선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영토 밖에서 또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외국 중재인이 선언하는 판정이라고 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중재의 외국 성은 중재 설립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영토적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외국 중재의 개념에 기초하여 상사중재에 관한 법률은 외국 중재판정의 개념이 해결을 위해 베트남 영토 내부 또는 외부와 관계없이 외국 중재인이 선언한 판정임을 확인했다. 판정 장소가 베트남 영토 안팎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되는 한 이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외국중재판정으로 인정된다.

---

16) 중재법(2010), 제3.11조

### III. 중재판정 취소의 분석

#### 1. 중재판정 취소의 특성

중재판정이 취소된다는 것은 국가의 사법 기관인 법원이 중재판정을 검토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활동에 대한 법원의 조사와 감독의 한 형태다.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은 일회성 재판이 특징이며,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재 과정이 엄격하게 감독되는 과정을 따르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중재절차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중재판정 취소 절차는 분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중재판정의 취소는 상사 중재법의 조항으로,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은 중재자가 중재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중 하나다. 중재판정 취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중재판정에는 최종까지가 있다. 중재판정은 상업센터 법에 따른 거래 취소 사유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중재판정 취소의 핵심은 중재판정이 무효화 되고 분쟁 당사자에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재판정 취소의 긍정적인 의미는 중재판정의 취소로 인해 법원이 중재판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취소신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각 무효 사유를 검토하고, 중재판정이 본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취소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취소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중재판정 전체가 무효화됨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는 먼저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재판정이 집행될 때 기대했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를 방어하려면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보상이 집행되면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의 비즈니스

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즈니스 전략 및 계획의 혼란, 업무 방해, 재정적 병목 현상 등 평판과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

## 2. 중재판정의 취소 현황

중재판결은 중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소송에서 제기되는 모든 분쟁 내용을 해결하여 중재 소송을 종결하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공동심판을 갖는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중재 재판의 취소는 법률상 무역 심판의 절차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정된 중재 재판의 재검토를 위해 법원이 실시하는 법적 절차이다. 분쟁 당사자들 중 한 명은 중재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취소된 사건 중 하나에 속하는 판결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재 재판의 취소도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재판정 무효화에 관한 회의에서 발표된 VIA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679건의 중재판정 중 46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이 제기했으며 이 중 19건의 판정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sup>17)</sup> 최근 2017년에는 VIAC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17건에 대한 취소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중 3개의 신청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 3.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

표. 3. 베트남 상사 중재법의 11장 중재판정 취소

조항	내용
68조 중재판정 취소 사유	1. 법원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를 고려함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

17) Nguyen Ngoc Minh, N. T. T. T. a. N. T. M. A. (2019).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2020, Global Arbitration Review.

	<p>이 취소됨</p> <p>a)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p> <p>b)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중재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본 법의 규정에 위배됨</p> <p>c) 분쟁은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하에 있지 않습니다. 중재 판정에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은 취소됨</p> <p>d)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삼은 당사자들이 제공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중재인이 분쟁당사자로부터 금전,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수수하여 중재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e) 중재 판정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됨</p> <p>3. 법원이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을 고려할 때 입증 책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p> <p>a) 본 조 제2항의 a, b, c 및 d항에 명시된 중재 판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그러한 경우 중 하나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음</p> <p>b) 본 조 2항 e 명시된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의 경우, 법원은 중재 판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할 책임이 있음</p>
<p>제69조. 중재판정 취소를 요청할 권리</p>	<p>1.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본 법 제68조 2항에 명시된 경우 중 하나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관할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를 요청. 중재 판정 취소 요청에는 중재 판정 취소</p>

	<p>요청이 근거가 충분하고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문서 및 증거가 첨부되어야 함</p> <p>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신청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중재 판정 취소 요청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p>
<p>제70조 중재 판정 취소 신청</p>	<p>1. 중재 판정 취소 요청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a) 신청 날짜, 월, 연도</p> <p>b) 요청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p> <p>c) 중재 판정 취소 요청 및 근거.</p> <p>2. 요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p>a) 중재 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p> <p>b) 중재 합의서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p> <p>외국어로 된 요청에 첨부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은 정식으로 인증되어야 함</p>
<p>제71조 법원은 중재판정 취소 요청을 검토</p>	<p>1. 법원은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을 수락한 후 즉시 중재 센터 또는 임시 중재 위원회의 중재인, 분쟁 당사자 및 검찰청에 함께 통보할 권한을 갖음</p> <p>2. 법원장은 수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그 중 1명의 판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로 주재하게 됨</p> <p>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검토 위원회는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야 함. 법원은 요청을 고려하기 위한 법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연구를 위해 파일을 같은 수준의 검찰관에 전송해야 함. 이 기간이 끝나면 검</p>

	<p>찰은 해당 요청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 위해 파일을 법원에 반환해야 함.</p> <p>3. 회의는 분쟁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가 있는 경우, 동급 검찰청 검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꺾적으로 신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정식으로 소집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승인 없이 회의에서 퇴장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중재 결정 취소 청원을 계속해서 심의</p> <p>4. 요청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본 법 제68조의 규정 과 첨부 문서를 토대로 요청을 고려하여 결정. 중재위원회가 이미 해결한 분쟁의 내용을 재심사하지 않고 검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소환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찰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회는 다수결로 토의·의결함</p> <p>5. 요청 검토 위원회는 중재 판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 중재 판정 취소를 요청한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정당한 소환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꺾하거나 협의회의 승인 없이 회의에서 퇴장하는 경우, 협의회는 심의 중단 결정 요청서를 발행해야 함</p> <p>6. 법원은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당사자, 중재 센터, 임시 중재인 및 같은 수준의 검찰에 보냄</p> <p>7.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검토 위원회는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재 판정 취소 신청에 대한 고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중재 판정의 무효 사유를 제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의 의견, 중재위원회는 절차상의 오류가</p>
--	---

	수정되었음을 법원에 통보해야 함. 중재위원회가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을 계속 고려할 것임 8. 위원회가 중재 판정 취소 결정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고려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한쪽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위원회가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말라는 요청을 고려하는 경우 중재 판정이 집행 9. 모든 경우에 중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법원에서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송 개시 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유효
제72조 중재 관련 법원 수수료	법원에 중재인 선임 요청, 임시 긴급 조치 적용, 중재 판정 취소 요청, 중재 판정 등록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는 법원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시행

무역 중재법(2010) 제3조 제10항에 따르면 중재판결은 중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소송에서 제기되는 모든 분쟁 내용을 해결하여 중재 소송을 종결한다고 규정한다. 즉, 중재판정은 전체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관련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판정은 자의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형식 및 내용에 관한 일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재법(2010) 제69조에 규정된 중재판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방당사자가 평의회를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 취소 요청에는 중재판정 취소 요청이 근거 있고 적법함을 증명하는 문서 및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2010년 상사 중재법(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은 취소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음과 두 가지 경우: (i) 제68조 2항 a, b, c, d 항의 사유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 (ii) 법원은 제68조 2항 e 항의 근거에 대해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할 책임이 있다. 요청과 함께 동봉해야 하는 문서 및 증거는 중재법(2010) 70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중재법(2010)의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음과 5가지가 있다. 18)

(a)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이 근거는 상업 중재법 제68조 제2항 b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원칙은 중재가 있기 전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중재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고 중재 재판소가 선언한 판정의 구속력을 수락하는 데 동의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부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는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중재합의의 형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재합의의 형식은 2010년 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항에서는 중재합의가 계약상의 중재조항이나 비공개 합의의 형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위의 조항을 보면, 중재합의에는 중재조항(계약서 내)과 별도의 중재합의라는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 기준 역시 위에서 언급한 중재합의의 개념과 일치한다. 중재합의는 성립 시기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중재합의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는다. 두 번째 유형은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것이다.

향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중재합의는 계약서에 첨부된 중재조항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향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상 당사자들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에 첨

18) 중재법(2010), 제68조 제2항

19) 베트남 2010년 상사중재법 제2장 중재 합의 제16조 중재합의의 형식

부된 일반 중재조항만 있으면 된다.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어떤 분쟁이 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세히 설명하면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집행 불가능한 중재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중재조항은 분쟁이 발생하면 단일 중재자로 구성되고 구체적으로 중재자로 식별되는 임시 중재 패널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정된 중재인이 어떤 이유로 위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재선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중재조항은 시행할 수 없으므로 중재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일부 중재센터는 종종 당사자들에게 센터의 모델 중재조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 중재 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옆에 있는 베트남 경제와 산업은 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른다.". 이러한 양식 조항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유효성이 완전히 보장된다.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유형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특정 분쟁 유형을 식별하므로 상업 중재를 보다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2010 상사중재법의 자의적 규칙에 반영된 그러한 합의를 존중하고 유지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청원 통지의 순서와 방식에 동의 및 기타 문서는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b) 중재위원회 구성 요소, 중재 소송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역 중재법(2010)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이 근거는 2010년 상업 중재법 제68조 2항 b점에 명시되어 있으며, 결의안 01/2014 제14조 2항 b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중재 재판소의 구성 및 중재 규칙에 대해 합의했지만 중재 재판소가 당사자 또는 중재 재판소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은 취소된다. 법원이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는 중재 2010은 중재 재판소가 이를 해결할 수 없거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되어야 한다.

일부 중재절차는 실제로 위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늘날 대중적인 중재판정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보낸 중재 재판소의 통지는 소환장이 아닙니다. 중재 재판소 문서의 실행 또는 송달은 법원에 의해 "유

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법적 절차에 참여 등이 있다.

(c) 분쟁은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없으며, 중재판정이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내용이 취소된다.

이 근거는 2010년 상사 중재법 제68조 2항 c점에 규정되어 있다. 2010년 상사 중재법 제2조에 따르면 중재 관할권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이다. 현재 베트남법은 2005년 상법에서 상사분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2005년에 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규정<sup>20)</sup> 및 2015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5건 사업상 분쟁<sup>21)</sup>은 2010년 상사중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재인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는 일방이 상업활동을 하는 분쟁이다. 법인: 합법적인 투자개발회사(상업 당사자)가 주택에 관한 분쟁을 일으켰다. 민간기업: 무역회사에 제품을 주문한다. (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비자와의 분쟁과 관련하여<sup>22)</sup>: 중재는 소비자의 합의를 위해 서만 허용된다. 셋째, 분쟁은 법률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결을 위해 상업적 중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조건 외에도 중재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재 판정에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화된다. 이는 2010년 상사중재법에 방금 포함된 중재판정 취소의 근거다. 이 조항은 한편으로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근거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므로 실무에 적합한다. 반면에 중재판정에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취소되기 때문에 중재인은 기술을 향상하게 시키고 중재판정을 발표할 때 주의해야 한다.

---

20) 베트남 2005년 상법 제3조 제2항: 상업 활동은 상품 구매 및 판매, 서비스 제공, 투자, 무역 촉진 및 기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21) 베트남 2015년 민사소송법 제30조

22) 2010년 상사 중재법 제17조

(d) 중재판정부가 판정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당사자들이 제공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중재인이 중재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 당사자의 금전,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받는 경우;

이 근거는 2010년 상사중재법 제68조 2항 d점에 규정되어 있으며, 결의안 01/2014 제14조 2항 d점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당사자들이 제공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이는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근거가 된다. 2010년 상업 중재법 제68조 제2항 d점에서, "중재인이 분쟁 당사자로부터 금전,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수령하여 중재판정의 공정성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재 판정이 취소됩니다.". 이러한 근거는 많은 국가의 법률에서도 인정된다.

(e)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이 근거는 2010년 상업 중재법 제68조 2항 e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재 판정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 되는" 경우 무효가 된다.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와 "국가의 이익, 일방 또는 제3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현행 규정은 여전히 매우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는 국제법을 취소하기 위한 근거로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했다는 사실로 이어졌다.

#### 4. 한-중-베 상사 중재 취소 비교

##### 1) 한-중 상사 중재 취소 절차

가. 한국 상사 중재판정의 취소제도의 절차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의 계약적 성격을 충분히 존중하고, 당사자 의견자치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거의 모든 규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자치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중재법에 따른 판결의 취소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유효한 판결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판결의 해석·정정·보완을 청구하는 경우 위 기간은 유효한 정정·해석·보완 판결

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소송 취소 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절차는 변동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판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짧은 소송 취소 기간은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패소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취소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길게 늘어진 소송은 상대방을 부담하게 만들고, 특히 패소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할 때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들은 더 이상 판정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행 거부 사유가 대한민국 신 중재법 제38조, 뉴욕협약 및 유엔국제무역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 시범법에 의거 각호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미 집행된 판결을 다시 집행하고 중복집행을 피하려고 집행이 인정된 중재판결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판결취소를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새 행정부는 이전 중재법의 조항을 변경하여 판정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구 중재법 제15조에서는 법원이 중재판정을 집행하기로 한 후 당사자는 제13조 제1항 및 제5호에 명시된 사유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이 있는 경우 판정은 취소된다면 이전 절차에 따라야 하며,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설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법률은 이미 집행판결 후의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사유를 한정했으며, 따라서 특정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에 따라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판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재 무효화 절차는 중재 개시 당시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재의 유효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여전히 양자소송이므로 양측이 모두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취소판결은 일반 판결로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양 당사자는 여전히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의 일반적인 보장을 누리고 있다.

#### 나. 중국 상사 중재판정의 취소제도의 절차

중국 최초의 중재조직, 절차, 판결 등 사항에 관한 규정은 법률 14개, 행정법규 82개, 지방법규 190개에 구체화되어 있으나, 취소제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특히 당사자의 보유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취소를 신청할 권리와 상황, 취소신청 가능 여부나 취소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1994년 중재법이 공포된 후, 중국은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효화 제도를 추가했다. 동시에 민사소송법에도 강제집행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 둘을 합쳐 외국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자산에 대한 중재판정 제도를 성문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 협약은 중국의 국제 상사 중재 판정 취소 시스템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구성한다. 중국의 국제 상사 중재 판정 취소 시스템은 비교적 순조롭게 시행되었으며 이는 해당 구조와 관련 법률 규정에 반영되어 있다. 해외에서 국제상사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절차는 항소절차, 특별절차, 재심절차 등으로 구분되나, 중재취소 절차의 대상, 관할법원 및 기한은 중국 법에 규정되어 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2004년 7월 대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에 관한 각종 쟁점 해설> 제21조에서는 무효화 절차를 일반적인 절차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무효심판 절차를 일반적인 1심 절차로 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단순하고, 실제적인 요구 사항을 많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적용 가능성이 강력하지 않아 중재 결정 과정에서 매우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판정 취소 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은 당사자가 판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후 권리를 통해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다만, 중재판정 취소 기한은 중재판정 포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기한을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중국 중재법에 따르면 2개월 간의 심리 기간이 너무 길어 중재 기한이 연장됐다.

#### 2) 한-중-베 상사 중재 취소 절차 비교

중국 중재법 제5장은 중재판정의 취소 절차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중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의 법정기한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중국 중재법의 중재판정 취소 기한은 한국 중재법의 동종 기한과 비교하여 길다고 한다. 또한, 세계 주요국의 중재법상의 중재판정 취소 기한과도 비교하여 중국의 기간이 더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판정 취소 기한의 너무 길면 중재판정의 효력이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고, 불성실한 당사자에게 판정 이행 시간을 지연시켜 중재판정과 섭외 중재판정의 취소 절차를 심사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 즉 내국민 대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심사범위를 절차적 심사에만 한국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중재 입법은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에 대해 투 트랙을 실행하고 있다. 국내 중재판정은 섭외 중재에 비해 심사 범위가 매우 엄격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 중재제도의 기본 법리에도 위배되며, 절차 안배에서도 완전히 타당하지 않아, 진일보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

중재 취소신청 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 법원은 이미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면 당사자는 다시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점은 중국 중재법에서 규정한 1심 최종심의 기본원칙과 유사하며,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하에서 법원은 다시 이 쟁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고, 법원도 판결 결과에 대해 구제할 수 없다. 법원에 상소할 기회가 없고, 합법적 권익을 보장받기 어려워, 당사자가 판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구제 경로가 차단 된다.

표. 4. 한-중-베 상사중재 취소 절차

	한국	중국	베트남
신청 기간	3개월	6개월	30일
신청 주제	중재판정의 당사자	중재판정의 당사자	중재판정의 당사자
심사 기준	- 국내 중재판정과 섭외 중재판정의 취소 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 국내에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심사는 진행한다. - 외교 문제 절차 및 관련 중재 절차에 대	- 중재판정부가 이미 해결한 분쟁의 내용을 재심사하지 않는다.

	- 중재판정에 대한 절차적 검토에만 국한하다.	한 심사를 진행한다.	- 국내 중재판정과 섭외 중재판정에 대한 절차적 심사에만 국한하다.
소송원칙	인정과 집행은 상고할 수 없다.	1심은 최종심이다	1심은 최종심이다

베트남은 중재 판정문이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장 빠른 취소신청 기간을 규정한 국가다. 반면에 중국은 6개월 이내 취소신청 가능하다. 신청 주제에 대한 3 국가가 중재판정의 당사자에 관련 취소 신청 동일한다. 베트남과 한국은 국내 중재판정이나 섭외 중재판정이 상관 없이 중재판정에 대한 절차적에만 심사하는 반면에 중국에는 국내 중재판정과 섭외 중재판정에 따라 심사 내용도 다르다. 소송원칙에 대한 중국과 베트남은 1심은 최종심이 규정되며, 한국이 인정과 집행은 상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3) 한-중 각국의 상사 중재 판정 취소사유

#### a) 한국 상사 중재 판정 취소사유

한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법률 또는 대한민국 중재법에 따라 중재합의는 무효로 간주한다.

무능력은 당사자가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자연인의 경우 행위능력의 제한을 의미하며, 법원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중재합의의 무효는 중재합의의 부재, 무효, 효력 상실, 이행 불가 등 여러 상황을 가리킨다. 중재합의의 유효 여부는 당사자 간에 지정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 중재판정은 한국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외국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지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지가 중재 가능성의 핵심 문제다. 중재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중재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 가능성의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한국의 중재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합의를 다루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다. 제36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중재 가능성의 결여를 별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을 반하여, 중재 가능성의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중재절차에서 패한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본안에 대해 변론할 수 없었을 때, 이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중재절차는 소송절차와 유사한 사법적인 절차로 간주되며,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에서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참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패한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론할 수 없었을 때, 이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중재판정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다. 중재절차는 소송절차와 유사한 사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는 중재인의 선정 과정 및 중재절차에서 각 당사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절차에서는 각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 및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고 당사자 간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원칙은 중재가 정의되고 실행될 때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이 다른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른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에 대한 사실을 다루거나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법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다룬 경우, 이러한 사실로 인해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 대한 사실을 다루는 경우,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재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된 분쟁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법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다루는 경우, 이 역시 취소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된 범위를 넘어서는 결정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중재 결정의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중재판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아니하였다는 사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해당 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결정은 해당 법에 따라서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가 해당 법의 강행규정에 위배 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재 체계가 법률에 따라 구성되었고, 중재절차가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중재 참여자들이 구성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의 없이 중재가 진행되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해당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적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재 체계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한국 중재법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 자치가 문제가 되며, 종래의 입장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영토주의에 따라 강행규정이 지배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특히 중재법 제2조 제1항이 영토주의를 취하고 있어 중재지가 한국 안에 있는 한 그곳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동 항이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것을 불허하기 때문에 당사자 자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영토주의를 취하고 있어 중재지가 한국 내에 있는 한 해당 지역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항이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나 자치로는 중재절차의 강행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뉴욕협약에서는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당사자의 합의가 뉴욕협약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뉴욕협약이 국제적인 중재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규제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원칙들은 국가 간, 국제 간 중재에서의 법의 적용과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다.

한국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의 해설이다:

중재법 제13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유 불기재"나 "이유 불비"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당하게 갖추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취소사유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서 "판단누락 등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 중 일정한 사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에는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판정에 전혀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재법 제13조 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중재관의 이유 중 판단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판단 누락이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판단 누락이 취소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락이 중요하고, 그 누락이 없었다면 판정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재판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과 중재판정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중재판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데, 합리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판단이 누락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하자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당됨을 나타내고 있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한국에서는 중재 가능성을 " 중재 적격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는 특정 법적 규정이나 예외 사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정 법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허용되지 않거나, 특정 법적 사항에 대한 중재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은 중재로 해결될 수 없다. 분쟁의 성격이나 내용이 공공정책

에 위배되거나,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중재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정 법률이나 계약에서 재산권의 포기나 제한에 대한 중재조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분쟁이 형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중재보다는 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법적 규정, 계약 조항, 또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주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 또한, 중재 가능성의 결여와 공서 위반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언급되고 있다.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주재 가능성이 없다면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어, 이로 인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재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중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가능성의 결여와 공서 위반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 국가가 국가적 목적이나 정책을 위해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재 가능성의 개념은 공서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며, 중재 가능성이 없으면 공서를 위반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중재 가능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공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특정 법률적 상황에서는 중재 가능성의 결여가 공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장과 견해는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법률 체계 및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 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한국 중재법" 및 관련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재판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재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재법은 중재의 유효성과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은 중재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중재가 공정하고 도덕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재판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승인이나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중재법 제36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내용이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중재판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중재판정이 공정성과 도덕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중재판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노력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재판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

표. 5. 한국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사유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취소사유	법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취소사유
당사자들의 무능력 또는 해당 계약은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분쟁의 대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소송절차 위반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위반
중재인의 관할권을 초과	
(d)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음	

#### b) 중국 상사 중재 판정 취소사유

중국은 국내 중재판정과涉外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달리하고 있다. 취소사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사유와 법원의 직권에 따른 취소사유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표. 6. 중국 중재판정 취소사유

국내 중재판정 취소사유	섭외 중재판정 취소사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의 중재조항에 서명하지 않거나 이후에 서면 중재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가 중재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 경우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이를 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재합의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 위반
판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상대방이 공정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한 경우	
중재인이 사건판정 시 뇌물을 요구·수수하는 경우,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1) 국내 중재판정 취소사유

중국의 국내 중재판정 취소 법정 사유에 관한 규정은 주로 중재법 제 58조에서 구현되며, 법정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가 포함된다.

가.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중국의 중재법에 따른 중재 합의의 중요성과 중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다. 중국의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간

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만 중재 청구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재 청구 시에 중재 합의의 존재 여부를 점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 청구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없으면 중재위원회에서는 해당 청구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합의는 중재법이나 계약법에서 정한 무효 또는 취소 가능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선언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재 합의 자체에 부적절한 조건이나 유효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를 가리킨다. 중재 합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선포되면, 해당 중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재 합의가 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선포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중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재 체계에서 중재 합의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중재판정의 취소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가 중재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관련 사건에서 중재지 본국의 중재 관련 법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는 중재판정의 근거 법적 규정이나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중재 합의에 따른 판정 범위를 제한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제청한 중재 합의에 따라 판정해야 하며, 중재를 받는 사항은 당사자가 신청한 분쟁 부분에만 제한됩니다. 이는 중재판정의 범위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법원에서 중재 청구 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중재판정 취소의 이유로 삼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법 실천 중의 '초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주장은 당사자의 중재 신청 초과가 중국 중재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중재 권리 없음' 상황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중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중재를 청구할 경우 중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은 '중재 권리 없음'이란 중재 사항이 중재적합성을 갖

추지 않음을 의미하기에 법정 절차 위반 상황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재가 적합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중재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과 근거에 대한 해석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원이나 중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다.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송과 달리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중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법률에서 중재판정부는 중국 중재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릴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판정에 대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절차 위반이 '사건의 정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사는 이에 대해 상당한 자유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또한, '선여중재'가 법정 절차 위반으로 인해 중단된 선례가 있다는 예시가 언급되어 있다. '선여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이미 중재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중재인을 미리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정 절차 위반이 판단되어 중단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법정이 중요한 절차적 기준이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경우에 중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라. 판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중재에서 사용된 증거가 위조되었을 경우, 이는 중재의 공정성과 합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규정, 업계 관례, 거래 습관에 따라 사건을 중재하며, 증거를 수용하는 기준은 소송과 유사하지만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재에서 사용된 증거가 위조되었다면 이는 중재의 공정성과 합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재기구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증거의 적용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소송 방식을 참조하여 증거를 채납하고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되어 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소송 규칙에 따라 증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 환정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거가 확실하게 위조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중국 중재법 제5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총론적으로, 중재에서의 증거 관리와 판단은 일반적으로 소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재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당사자의 권리와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 상대방이 공정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한 경우

중재 취소를 신청하는 사건에서 사용된 증거가 사건의 공정한 판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중국의 사법 실천에서 중재에서의 입증 규칙이 소송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증거가 사건의 법률관계, 법률 사실, 및 판정의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증거는 공정한 판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중국의 중재에서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언급되어 있다. 특히 중재에서는 타자의 주장, 입증, 입증의 책임을 특수한 상황에서 뒤바꾸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재에서의 증거 처리 규칙은 중재의 일반적인 적용 입증 규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재에서는 입증의 책임과 규칙이 소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중재에서는 입증 규칙이 소송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거나 입증의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이 중재의 특성과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바.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중재 인가의 절차를 이끄는 전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설명되어 있다. 아울러 중재인이 뇌물 요구, 부정행위, 법을 어기고 판정하는 행위는 중재인의 직업적 소양 문제로 규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주는 피해는 당사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와 중재 사업 전체에 대한 타락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재인이 뇌물 요구, 부정행위, 법을 어기고 판정하는 것은 중재인의 직업적 소양 문제로 규정되어 있다. 중재 중 중재인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주는 피해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 중재 사업에 대한 타락으로 여겨진다고 설명되고 있다.

## (2) 중국 섭외 관련 중재 판정 취소 사유

가. 당사자들이 계약의 중재조항에 서명하지 않거나 이후에 서면 중재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 협의서나 중재 조항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서면 문서로서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아도,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현이 중요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섭외중재판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에 교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되고 있다. 거래 방식과 습관이 다양화되면서 서면 문서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 채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서면 문서로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의사 표현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이를 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

중재의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며, 당사자들이 충분한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한 측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다른 측은 반대 의견이나 질문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재절차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방당사자가 주장이

나 의견을 제시할 때, 상대방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질의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피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피신청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신청자 자신의 원인으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나 새로운 중재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판정은 취소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의견과 질의 제출을 허락하여 중재판정 형성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중재합의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의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 간에 절차 규정이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중재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법적 이유로 취소신청을 할 때, 해당 판정이 국내 판정에 속하는지, 섭외 판정에 속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 사이에는 입증 기한, 답변 기한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재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법적 이유로 취소신청을 할 때, 해당 판정이 국내 판정에 속하는지, 섭외 판정에 속하는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 간에 중재절차와 중재 규칙 불부합을 단일한 증거 문제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절차와 중재 규칙을 증거 문제로 인용하여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 소송 절차 위반

중국의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에서 중재 사항이 약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당사자의 중재 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섭외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내 중재에서의 중재판정부 모권 중재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섭외 중재판정이 공공정책을 위배하는 경우에도 취소사유로 인정되며, 공공정책은 중국의 법률 기본원칙, 국가 주권, 사회공서와 안전, 사회의 공서양속 등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을 위반하거나 침해한 경우 섭외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재에서는 공공정책을 위반한 경우가 외연이 큰 특정 사례로 제한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중재에서는 해당 사유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 한국과 베트남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취소사유 및 법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취소사유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는 분쟁의 대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및 미풍양속 및 사회 질서 위반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 결정하기 명확히 규정한다. 그렇지만 베트남에는 법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취소사유가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 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다. 위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 중재판정 취소사유는 국내 중재판정과 섭외 중재판정에 따라 취소사유가 다르다. 국내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취소사유 비슷하지만, 섭외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중재합의 여부를 고려하고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이를 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 중재합의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소송절차 위반에 대해만 심사한다.

## IV.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판례 및 개선 방안

### 1.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판례

가. Decision No. 11/2019/QĐ-중재판정, 2019년 11월 14일 사건<sup>23)</sup>

베트남이 뉴욕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원이 외국 중재판정을 자주 기각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 베트남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를 원할 경우 베트남에서 중재(예: VIAC 베트남 국제중재센터)할 것을 조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중재 판정조차도 판정 또는 중재 절차가 베트남 법률의 기본 법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법원에 의해 보류될 수 있다. Vinh Son - Song Hinh 사건은 중재 절차 중에 제쳐둘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관찰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 1) 개요

2010년, (주) Vinh Son Song Hinh 수력발전사(이하 베트남 회사)와 두 개의 중국 계약자(PowerChina Huadong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 및 China Railway 18th Bureau Group Co., Ltd, 이하 "중국 시공사")는 Kon Tum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에너지 라인 품목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번호 885/2010/HD-CPA-TH). 이 프로젝트는 총 7조 4,080억 동(미화 3억 1,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승인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14년 중국 시공사는 베트남 회사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량의 약 25%만 완료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반면 베트남 회사는 중국 시공사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8월 23일, 중국 시공사는 베트남 회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VIAC")에 베트남 회사를 상대로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회사는 중국 계약자가 계약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건설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않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

23)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및 결정을 게시하는 전자정보 홈페이지:  
<https://congbobanan.toaan.gov.vn>

2019년 4월 10일에 내려진 중재 판정에서 VIAC 재판소는 베트남 회사가 중국 계약자에게 2조 1,630억 동(미화 9,0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베트남 회사는 VIAC 재판소가 중재 절차에서 절차적 불규칙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하노이 법원에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즉시 신청했다.

## 2) 판결

하노이 법원은 베트남 회사의 주장을 지지하고 2019년 11월 14일 결정 No. 11/2019/QD-PQT를 통해 VIAC 재판소가 내린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i) 중재 재판소가 심리 장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중재 심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제1 근거");

(ii) 중재 재판소가 피신청인(베트남 회사)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제 변호사 협회 규칙 및 지침("IBA 규칙 및 지침")을 참조한 경우("제2의 근거");

(iii) 손해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 재판소는 손해 금액에 대한 피신청인(베트남 회사)의 제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중국 시공사)이 재판소에 제출한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했다("제3의 근거").

## 3) 시사점

**제1 근거: 중재 재판소가 심리 장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중재 심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하노이를 심리 장소로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중재재판소의 임시구제신청(피신청인에게 보증금 지급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와 외국인 중재인 2명을 상대로 하노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을 통해 피청구인은 재판소와 외국 중재인에게 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른 중재인 면책을 규율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우려한 재판소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중재위원회가 중재 심리를

개최하는 장소를 오사카와 싱가포르로 변경했다. 하노이 법원은 심리 장소 변경이 중재 과정에서 도달한 당사자들의 원래 합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제 중재에서, "중재 장소"의 결정은 중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이 종종 중재 절차를 규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국제 중재 규칙은 중재 장소와 중재 위원회가 중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구별한다.

베트남에서는 상사 중재법(2010)에는 "중재 장소"와 "청문회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상사 중재법(2010) 3.8항은 "분쟁 해결 장소는 중재 위원회가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또는 당사자가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분쟁 해결 장소가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경우, 중재 위원회가 그러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판정은 베트남에서 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세 곳 중 어느 곳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 분쟁 해결 장소; (2) 중재 판정이 내려진 장소; (3) 청문회 장소는 베트남 법에 따라 중재 장소로 간주된다. 중재위원회가 중재 심리를 개최하는 장소가 아니라 판정 장소를 중재 장소로 간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게다가, 중재 판정이 단순히 심리 장소(분쟁 해결 장소가 아님)를 이유로 보류되는 것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중재 판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은 심리 장소가 분쟁 해결의 장소라는 법원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중재 재판소가 심리 장소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절차적 요소가 재판소의 실제적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때마다 향후 판정 채무자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선례가 될 것이다.

**제2의 근거: 중재 재판소가 피신청인(베트남 회사)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제 변호사 협회 규칙 및 지침("IBA 규칙 및 지침")을 참조한 경우**

결정 11에서 하노이 인민법원은 중재 재판소가 베트남 회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상사 중재법(2010) 56.2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6조 제2항은 "피고가 적법하게 분

쟁조정회의에 소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중재위원회의 승인 없이 회의를 떠난 경우에도 중재위원회는 입수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에 기초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사 중재법(2010) 조항 56.2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하지 않을 때 중재 재판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법 25.c 조<sup>24)</sup>를 반영한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 조항은 중재 재판소가 분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이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증거를 평가하여 분쟁을 판결하도록 지시할 뿐이다.

VIAC 중재 규칙의 조항 38.5는 규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각 중재 재판소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서, 센터와 중재 재판소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고 분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소는 증거 판결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예: 국제 중재에서의 증거 수집에 관한 IBA 규칙 또는 기타 규칙 참조). 이 경우, 국제 중재 실무에서 흔히 그렇듯이, 중재 재판소는 증인 진술 및 기타 증거의 유효성을 고려할 때 IBA 규칙을 참조로 삼았다. 허용 가능성, 관련성, 중대성, 및 무게. 예를 들어, IBA 규칙 4.7조에 따라 증인이 증거 심리에 증언을 위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증인의 증인 진술을 무시한다. 결정 11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베트남 회사의 증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IBA 규칙에 따라 중재 재판소는 증인 진술을 고려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회사에 대한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 재판소는 여전히 베트남 회사의 증인 진술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회사와 증인이 증거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진술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설명할 권리를 포기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사건을 고려할 때 베트남 회사의 증인 진술에 의존할 의무가 없다.

위의 내용을 무시하고 법원은 중재 재판소가 베트남 회사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아 2010년 LCA 56.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24) UNCITRAL 2012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모델법에 관한 판례법 다이제스트

제3 근거:손해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 재판소는 손해 금액에 대한 피신청인(베트남 회사)의 제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중국 계약자)이 재판소에 제출한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했다.

세 번째 근거로, 하노이 법원은 재판소가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임명한 전문가의 증거에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다른 실체적 사안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의견서나 검사 결과 등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중재판정부에 검사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경우 상사 중재법 제46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검사 명령 여부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다. 즉, 검사를 명령하는 것은 중재 재판소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사적 판결 시스템이며, 근본적인 법률 위반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결정 11은 2019년 11월 12일에 발표된 하노이 인민법원의 결정 No. 10/2019/QĐ-PQTT와 충돌한다. 이 경우 중재 과정에서 판정 채무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재 재판소에 상사 중재법(2010) 46.3항에 따라 감정을 명령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그 결정에서 자산 평가 요청에 대한 결정의 고려는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내에서 분쟁의 내용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상사 중재법(2010) 71조에 따라 법원이 중재판정의 무효화 신청을 고려할 때 중재위원회가 해결한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다.

결론, 법적 절차에서 중재 판정이 무효화되면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중재를 선택하거나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전체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중재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판정 채무자는 중재 판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

#### 나. Decision No. 1768/QĐ-중재판정, 2020년 10월 6일 사건<sup>25)</sup>

25)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및 결정을 게시하는 전자정보 홈페이지:  
<https://congbobanan.toaan.gov.vn>

2010년 상업중재법(Commercial Arbitration Law 2010)에 따르면, 국내 및 국제 중재 판정은 해당 중재 판정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범위가 넓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특히 베트남 법원 판결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이야기한다. 2020년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외국회사가 중재절차에서 해당 회사를 대표하는 베트남 변호사에게 발급한 위임장이 캄보디아에서 있는 베트남영사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로 베트남 중재판정을 취소했다. 호치민시 법원은 중재위원회가 불법적인 위임장을 수락한 것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근거로 인해 베트남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6년 9월 25일 Tai Seng Bavet Sez Company Limited("Tai Seng"- 캄보디아 회사)와 Chunghwa Telecom Vietnam Company Limited("Chunghwa"- 베트남 회사)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제22조는 협상이나 화해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중재기관 또는 제3자가 중재를 진행한다"고 "논쟁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Tai Seng은 Chunghwa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ai Seng은 호치민시의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VIAC)에서 Chunghwa를 고소했다. 2019년 6월 5일, 중재자는 최종 중재 판정인 판정 번호 44/18 HCM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재자는 Tai Seng의 일부 주장을 지지하고 Tai Seng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수료는 USD 61,290, 법적 수수료는 USD 7,279, 중재 수수료 USD 75,107, 기타 합리적인 비용은 USD 3,178.52이다.

Chunghwa는 Tai Seng이 중재 과정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베트남 변호사에게 발행한 위임장("POA")이 캄보디아 주재 베트남영사관의 합법적 화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 법령 No. 111/2011/ND-CP("법령 111/2011")<sup>26)</sup>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26) 2011년 12월 5일자 시행령 111/2011(베트남의 영사 인증 및 합법화 절차를 규제함)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베트남에서 인정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서류와 문서는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적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 이 법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위임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Chunghwa에 따르면 중재위원회가 위임장을 수락한 것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므로 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9월 25일 체결된 계약서 제22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이 합의하여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먼저, 합의가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베트남 관련 관할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가 실패할 경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재센터 또는 제3자에서 중재가 진행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청<sup>27)</sup>은 위임장이 법령 111/2011의 제2.2조에 따라 합법화되지 않았으므로 베트남에서는 법령 111/2011의 제4.2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68조 2항(중재판정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화된다고 규정)에 따라 검찰은 HCM 제44/18호 결정을 취소할 것을 관할 법원에 제안한다. 호치민시 법원은 검찰의 관점에 동의하고 법령 111/2011 제9조에 따라 위임장은 합법화에서 면제되는 문서 유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호치민시 법원은 중재조항에 중재 형식(예: 특별 중재 또는 기관 중재)이나 어떤 중재 기관이 중재를 관리할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VIAC가 Tai Seng의 중재 통지를 수락하고 당사자 간의 중재를 관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44/18 HCM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1768을 발표했다.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결정 1768에 따르면, 외국 당사자가 베트남 중재 절차에서 위임장을 합법화하지 못하는 것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호치민시 법원은 허가의 비합법화가 베트남 법률 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협하는 등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베트남에서 중재에 사용하기 위해 영사적으로 합법화되어야 하는 유형과 문서를 정의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이는 불합리하며 중재에 관한 다른 베트남 법률과 조화될 수 없다.

첫째, 법령 111/2011 제9조 4항은 베트남 또는 외국 기관이 베트남 또

---

27) 베트남 법에 따라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는 호치민시 인민검찰청(“검찰청”)(즉, 베트남 검사)이 참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한다. 검찰의 의견은 판사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자문적 가치를 갖는다.

는 외국 법률 규정에 따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서류 및 문서에 영사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신기관은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VIAC)이다. VIAC 규칙이나 베트남 법률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발행한 위임장이 합법화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호치민시 법원이 중재 절차에서 불법적인 위임장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은 물론 베트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청과 호치민시 법원은 중재를 대표 당사자가 인정되고 합법화된 위임장을 획득해야 하는 베트남 법원의 절차와 혼동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14(2)(dd) 결의안 01/2014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 즉 "기본 행위 규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률의 제정 및 집행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임장 합법화 문제가 전체 법의 제정 및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기본 행동 규범을 위반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발행한 위임 형식은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베트남 상사 중재법 제13조는 당사자가 법률 또는 중재합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계속하는 경우 중재 및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치민시 법원은 청화가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임장이 합법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청화가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1768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며 베트남에서 중재하는 외국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같은 건설 중재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문서와 증거가 포함된다. 외국 청구인이 베트남 중재에 사용하기 위해 모든 "외국" 문서를 합법화해야 하는 경우, 이는 외국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국내 상대방에게는 불공정한 이점을 초래할 것이다. 비합법화 문서는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VIAC의 규칙은 위임장의 합법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당사자들은 베트남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때 법적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68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으로, 베트남 변호사들로부터 많

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베트남의 중재 활동에 불안정한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특히 외국 당사자들에게 베트남이 중재를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 이 사건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은 후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중재/법원에 참여할 준비 단계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해외 문서를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가능하다면 베트남 내 관련 당사자를 통해 승인을 서명하거나 전체 문서를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 2. 개선방안

실제로 중재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자주 인용하는 두 가지 근거는 상업 중재법 제68조 b과 e의 근거이다. 즉,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중재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부합하거나 본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 판정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이 두 가지 근거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를 다룰 때 이를 위반하기 쉽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따르지 않는 언어나 중재판정에 기록된 화폐 단위가 부정확한 등 작은 실수라도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기 쉽다. 특히, 상업 절차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는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 결의안 No. 01/2014/NQ-HDTP(2014년 3월 20일자)에도 불구하고(결의안 01/2014/NQ) -HDTP)는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다”라는 근거의 범위를 제한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이 근거에 의존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sup>28)</sup> 취소는 사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데 자신감이 부족하다. 2014년 VIAC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6.7%만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했으며 그 중 12%만이 VIAC를 선택했다.<sup>29)</sup>

28) Tường Duy Lượng (2018), Một số vấn đề xem xét hủy phán quyết trọng tài, Tạp chí tòa án, 6-12

29) Đặng Xuân Hợp, 2014, “Một vài nét tổng quan về trọng tài thương mại tại Việt Nam”, tham luận trình bày tại hội thảo biện pháp giải

중재판정 취소 규정에는 불명확하고 엄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신청이 사실상 자의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상사중재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중재판정 취소 사유는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중재판정 취소 요청은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제출하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중재 결정 취소 선언 절차에도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중재판정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위배한다”는 근거가 너무 일반적이고 불분명하여 임의적 적용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강령과 법률에는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어 청구인은 중재판정을 '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쉽게 인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분쟁 해결 관행을 보면 이러한 이유로 취소된 중재 판정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 01/2014/NQ-HDTP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지만 "중재 판정 취소 요청을 고려할 때 법원은 중재 판정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기본법률 원칙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68조 2항 e항에 따라 중재 판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떤 특정 내용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설득력이 없어서 여전히 매우 혼란 상황이다.

둘째, 중재판정을 무효화하는 또 다른 흔히 인용되는 근거 중 하나는 "... 중재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위원회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류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에 근거하여 결의안 01/2014/NQ-HDTP에도 제14조에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상사절차법 제71조 7항에 명시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제한이 (이러한 근거로 인해)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상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신청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셋째, '중재합의 없음'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근거에도 많은 단

---

quyết tranh chấp ngoài Tòa án trong hệ thống tư pháp

점이 있다. 실제로 중재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법률에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중재합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많은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 V. 결론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상사중재법은 201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상업 중재의 권한, 중재 형식, 중재 조직 및 중재인을 규제한다. 중재 명령 및 절차;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중재 활동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베트남 내 외국 중재 조직 및 운영, 중재 판정 집행.상사중재법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으며, 무역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여 법의 타당성과 중요성이 높다. 국제무역 통합. 상사 중재법은 권한, 형식, 조직, 중재인, 명령, 절차, 권리, 의무, 당사자의 책임, 중재 활동에 대한 법원의 권한, 베트남에서의 외국 중재 조직 및 활동, 중재판정 집행한다.상사 중재법은 13장, 82조가 있으며 권한, 형식, 조직, 중재인, 명령, 절차, 권리, 의무, 당사자의 책임, 중재 활동에 대한 법원의 권한, 베트남에서의 섭외 중재 조직 및 활동, 중재 판정 집행.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법은 달성된 결과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통합 및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베트남 중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사 중재법을 신속하게 연구, 수정 및 완료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법무부 조사 통계를 통해 베트남 기업과 개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쟁해결 방법은 협상(57.8%), 법원(46.8%), 조정(22.8%), 중재 (16.8%) 순으로 나타났다.<sup>30)</sup> 상사중재법을 적용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상사중재법이 중재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으며 중재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수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분쟁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제 적용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중재인의 관할권 문제 및 베트남 법원의 별도 관할권에 관한 규정; 상업센터법 제2조 2항의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상업 활동을 하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규정은 통일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

30)

<https://quochoi.vn/tintuc/pages/tin-hoat-dong-cua-quoc-hoi.aspx?ItemID=67942>

상사중재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중재판정 취소사유는 많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중재판정 취소 요청은 당사자가 제출하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첫째, 중재판정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가 너무 일반적이고 불분명하여 임의적 적용이 불가피하다. 현재 베트남의 거의 모든 법규에는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어 청구인은 쉽게 '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중재판정을 인용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둘째, 중재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 법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분명히,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재위원회는 많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수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법원은 중재판정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송절차와 관련된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한 바 있다.

상업 중재법의 한계와 부적절적인과 현재 중재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 관행으로 인해 이 법률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특히 중재판정 취소 근거에 초점을 맞춰 중재법 완성이라는 목표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과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취소 없이 최소한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또한 설득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중재 판정이 무효화되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 최근 입법 작업 및 법률 적용을 위해 이 주제를 연구하는 시급성을 명확히 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논문에서는 2010년 상업중재법 제68조에 명시된 내용의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법 조항에 관한 지침을 분석했다.

이어서, 첫째,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이러한 근거의 일반성, 불투명성, 구체적 명확성 결여를 남용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베트남 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 법령은 중재 분쟁 해결과 관련된 원칙으로 근거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여전히 이 근거를 중재판정 무효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중재분쟁해결과 관련된 원칙은 무엇인지를 명시하여 이 근거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제한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법원이 중재 판정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대한 고등 법원의 심리 규정을 공포하는 것을 고려한다. 중재 결정에 대해 항소나 항의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다. 분쟁당사자나 중재위원회는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검찰은 항소할 권리가 없다. 그 결과, 당사자들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법원의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데 있어 자의성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이 중재판정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파기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외국 경험에 따른 임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중재 판정 취소를 요청하면 지방 법원은 대법원에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솔루션을 제안해야 한다. 대법원이 어떻게 답변할지는 주법원이 결정한다. 이 방법은 지방 법원의 자의성과 불일치를 제한할 수 있다.

##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베트남 상사 중재법(2010)의 제68조의 모호한 규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분쟁 판례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베트남 정보 접근 정책의 한계로 인해 논문은 가장 최근에 취소된 중재 판정 건수를 업데이트할 수 없었다.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매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취소된 중재판정이 없었지만 실제로 최고인민법원 전자정보 페이지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제68조에 규정된 중재판정 취소 5개 사유 중의 제2항 b 및 e 점으로만 근거하여 중재판정 취소 판례를 분석 연구했으나 중재판정 취소 사유별 중재판정 취소 판례를 분석 못 했다는 한계점이다. 향후 취소사유에 따라 모호한 판례를 1 사유씩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베트남 상사 중재법(2010) 11장 68조~72조는 중재 판정 취소사유,

중재 판정 취소 요청 권리, 중재판정 취소신청, 법원에서 취소 요청을 검토 및 중재 관련 법원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였으니 본 논문에서는 68조만 분석연구했다. 향후 베트남 상사중재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 취소에 관한 상사중재법 제11장 전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현아(2008), “중국중재법상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6.
- 박진아. (2016).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법학연구, 47(), 415-457.
- 베트남 2005년 상법
- 베트남 2015년 민사소송법
- 베트남 중재법(2010)
- 신충일. (2013). 베트남 신·구 중재법의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22(1), 343-372.
- 오현석(Hyon sok Oh). (2014).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29(4), 361-382.
- 오현석. (2014).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29(4), 361-382.
- 왕상곤. "한국과 중국의 상사중재 제도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3. 인천
- 유병욱. (2023). 베트남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99, 43-70, 10.35980/KRICAL.2023.8.99.43
- 정홍식, 임병우, 이연경, 김강. (2020).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사법연구, 26(2), 619-654, 10.38131/kpilj.2020.12.26.2.619
- 정홍식, 임병우, 이연경, 김강. (2020).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사법연구, 26(2), 619-654.

지엔향, 박성호. (2020).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VIAC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5(3), 147-166.

진경 (2013). "한국과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라북도

황티탄폭 (2019). "베트남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경상남도

## 국외문헌

Bui Thi Bich Lien. (2013).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Chính phủ (1994), Nghị định số 116/1994/NĐ-CP về tổ chức và hoạt động của Trọng tài Kinh tế, Hà Nội.

Chính phủ (2014), Nghị quyết số 01/2014/NQ-HĐTP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Hà Nội.

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Economic Arbitration No.116-CP

Decree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Economic Arbitration No.116-CP

Đỗ Văn Đại và Trần Hoàng Hải (2011),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trọng tài thương mạ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Law No. 54/2010/HQ12 on Commercial Arbitratio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17 June 2010, effective from 1 January 2011.

Liên hiệp quốc (1958), Công ước New York 1958 về công nhận và thi hành phán quyết trọng tài, New York

Nguyen C ,Vu A D . "Arbitration in Vietnam"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675-682.

Nguyen Ngoc Minh, N. T. T. T. a. N. T. M. A. (2019).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2020, Global Arbitration Review.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TP.HCM (2010),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ại học Quốc gia Tp.HCM,TP.HCM.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TP.HCM (2010),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ại học Quốc gia Tp.HCM,TP.HCM.

VietNam lawyer journal  
(<https://lsvn.vn/huy-phan-quyet-trong-tai-thuong-mai-theo-phap-luat-viet-nam-va-mot-so-kien-nghi1610677477.html>)

#### 웹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베트남국제중재센터 <https://www.viac.vn/>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https://congbobanan.toaan.gov.vn/>

베트남 법률 도서관 <https://thuvienphapluat.vn/>